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단지(민간임대) 임차인 모집공고

청약Home |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주택의 임차인 모집계획을 통해 청약자격, 입지조건, 신청 일자 등 일체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약 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모집계획의 내용과 관련된 청약 상담의 경우,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 **임대사업자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시공자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주택관리번호 : 2023950005**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는 임차인 모집시기와 입주시기가 동일하여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 임차인 모집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2단지) 상담 전화(☎02-798-8910)를 통해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공급 신청시 유의사항

- 본 임차인 모집안내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신청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0년)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3.02.10.)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명의 청약 불가)만 청약 신청할 수 있음.
- 당해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100% 추첨제를 적용하여 공급함.
- 당해 주택의 청약 신청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청약 신청 시간은 2023.02.15.(수) ~ 2023.02.16.(목) (09:00~17:30)입니다.
- 반드시 임차인 모집 공고의 신청 일자를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임대사업자 및 시행위탁자(이하 위탁자라 함)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공급신청 해야 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계약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임대사업자가 시행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되며, 청약 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사업 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추첨으로 진행됨.
- 당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는 불가함.(공급신청 전 반드시 확인 바람.)
- 향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보증하는 기관 등이 당해 주택의 부동산에 신탁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임차인은 동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으며, 임대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검사 전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함.
-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서는 1년을 기준으로 보증하며, 재가입 시 보증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보증금액 및 보증수수료가 증감될 수 있음. 사용검사 이후 주택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 한도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은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기준에 따르기로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전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차인의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입주 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 및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임차인에게 위약금이 부과되고 임차인 또는 전대인은 퇴거하여야 함.
-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현장수납(견본주택) 하지 않으니 지정된 납부일에 무통장(온라인) 입금하고 계약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기 바라며, 임대사업자는 수납 관련하여 약정일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선납금액은(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을 수 없음. 지정된 계좌 이외에 현장수납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관리 주체가 전대 확인 및 건물 점검, 수리하기 위하여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에 따라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 1인 최대 3개 타입 청약가능하며 타입별 1실 당첨가능합니다.(1인 최대 3실 당첨가능)
- 당해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가전・가구・인테리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 (퇴거 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원상복구라 함은 파괴・훼손된 부분을 복구하고 입주자가 부착한 부속물을 철거하여 임대차계약 당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함) 하여야 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건축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및「주택임대차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름.
- 당해 주택에 관한 기타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세운블록임대주택.kr)를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12 규정에 의거 서울시 중구 주택과-990호(2023.01.13)로 임대주택공급 신고완료**

■ **공급위치 :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8층, 지상 27층 1개 동 총 32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임대주택(일반공급) 61세대**

■ **공급내역 : 일반공급 100%(전국 청약 가능)**

■ **공급대상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

단위 : 면적(㎡), 세대수

주택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2023950005	42B	42.9980	23.7251	66.7231	34.3197	101.0428	24
	42C	42.7324	25.7420	68.4744	34.1077	102.5821	22
	45C	45.9844	25.7537	71.7381	36.7034	108.4415	15

- 공동주택 주변의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현황에 따라 입주 시기가 변경(단축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확정시 추후 고지될 예정임.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임.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홍보물 등으로 동·호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해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사용검사 시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어 별도 표기하지 않음. 임차인은 이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됨.
- 임차인은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 별도 분양 및 임대하는 시설들의 운영권 및 수익 부분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의 권리임을 인정하며 일체 관여를 할 수 없음.
- 상기 면적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으로 실입주 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2 임대보증금 및 납입조건

■ 임대조건

(전세형) **단위 : 세대수, 면적(㎡), 금액(원)**

타입	공급 세대수	동/호 구분	층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임대 보증금	계약금(10%)	잔금(90%)
					전용 면적	공급 면적	기타 공용	계약 면적		계약시	입주지정일
42B	24	102동 9호	4층	1	42.9980	66.7231	34.3197	101.0428	389,000,000	38,900,000	350,100,000
			5~6층	2	42.9980	66.7231	34.3197	101.0428	398,000,000	39,800,000	358,200,000
			7~10층	4	42.9980	66.7231	34.3197	101.0428	406,000,000	40,600,000	365,400,000
			11~15층	5	42.9980	66.7231	34.3197	101.0428	419,000,000	41,900,000	377,100,000
			16~27층	12	42.9980	66.7231	34.3197	101.0428	428,000,000	42,800,000	385,200,000
42C	22	102동 14호	5~6층	1	42.7324	68.4744	34.1077	102.5821	409,000,000	40,900,000	368,100,000
			7~10층	4	42.7324	68.4744	34.1077	102.5821	417,000,000	41,700,000	375,300,000
			11~15층	5	42.7324	68.4744	34.1077	102.5821	430,000,000	43,000,000	387,000,000
			16~27층	12	42.7324	68.4744	34.1077	102.5821	439,000,000	43,900,000	395,100,000
45C	15	102동 21호	4층	1	45.9844	71.7381	36.7034	108.4415	418,000,000	41,800,000	376,200,000
			5~6층	2	45.9844	71.7381	36.7034	108.4415	428,000,000	42,800,000	385,200,000
			7~10층	4	45.9844	71.7381	36.7034	108.4415	437,000,000	43,700,000	393,300,000
			11~15층	5	45.9844	71.7381	36.7034	108.4415	451,000,000	45,100,000	405,900,000
			16~27층	3	45.9844	71.7381	36.7034	108.4415	460,000,000	46,000,000	414,000,000

* 임대료 납부일은 입주 후 임대사업자 또는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지정하는 날로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주택별 임대조건은 동별, 층별, 향별, 일조량 등을 반영하여 임대사업자가 책정한 금액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임대조건(임대보증금)은 홈페이지 또는 카탈로그, 인쇄물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상기 임대조건은 기본시설(제공품목) 및 발코니 확장 추가시설(샤시는 기본시설임)도 포함되어 있음. 제공품목은 홈페이지 등 참고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지정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되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 증액에 따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은 변경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이자를 요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미납 임대보증금 보증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 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 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함.
- 입주 시 관리사무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를 예치시킬 수 있음.(단, 입주 시 1회 납부)
- 판매시설은 상기 임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사업자가 별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임.
- 상기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대항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보증대상으로 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보증금액이 0원에 해당되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하는 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질수 있다.
- 상기 주택은 임대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상기 임대보증금은 사용검사 후 임대 기간 다음에 정한 바에 의하여 보증에 가입할수 있으며, 보증에 가입할 경우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상기 임대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장함.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기간	임대계약 기간
보증대상	임대보증금 전액(「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금액)
보증 수수료율	보증기관의 보증 수수료율에 의함
보증수수료	보증금 × 보증 수수료율 × 보증기간(임대사업자가 75% 부담, 임차인이 25% 부담하며, 매년 보증수수료를 재산정함)
납부방법	월 임대료 납부 시 임대료와 함께 포함하여 납부

- 입주 지정 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사업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3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	· 최초 임차인 모집일(2023.02.10.)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 청약 신청 불가)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간은 2023.02.15.(수) ~ 02.16(목) (09:00 ~ 17:30)까지 가능하고 17:30 이후에는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신청 자격 미달)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최초 임차인 모집일은 공급자격조건의 판단 기준임. · 1인 최대 3개 타입 청약가능하며 타입별 1실 당첨가능합니다.(1인 최대 3실 당첨가능)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일시	**2023년 02월 15일(수) ~ 16일(목) (09:00 ~ 17:30)**	**2023년 02월 21일(화) 16:00 이후**	**2023년 02월 22일(수) ~ 23일(목) (10:30 ~ 16:30)**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 타입별 무작위 결정**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상가 107호**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함.

■ **청약 안내**

구 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 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및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원** (금일십만원)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전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민감임대주택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청약 신청 일시, 장소 및 신청 방법

신청 일시	신청 장소	신청 방법
2023.02.15.(수) ~ 2023.02.16.(목) (09:00~17:30)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청약 신청은 지정된 접수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자가 청약 신청 내용을 잘못 기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신청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청약해야 함.

5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모든 타입 공통	- 본 주택의 청약 신청, 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임대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으로 추첨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은 임대사업자가 정함에 따라 청약자 및 당첨자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1인당 최대 3개 타입 청약가능하며 타입별 1실 당첨가능합니다.(1인 최대 3실 당첨가능)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일정

구분	당첨자 발표 및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모든 타입 공통	2023.02.21(화), 16:00 이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일시 : 2023.02.22(수) ~ 2023.02.23.(목), 2일간 / 10:30~16:30 장소 :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151-1번지 세운 푸르지오 해리시티 상가 107호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상기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1항2호 규정에 의해 임대인이 임의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국민은행	358801-04-193338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시 :101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1010101홍길동)

• 본 계약장소에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임대보증금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미작성 시 당첨자 효력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임대보증금의 납부 약정 일에 임대사업자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니 해당 일에 상기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계약 시 기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계약금 입금증(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1통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인감증명서(용도: 민간임대주택 계약용) 1통 또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용도: 민간임대주택 계약용) 1통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 본인 계약 시 기본서류 외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위임장 1통(계약장소 비치,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집일(2023.02.1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세대주 본인 전체 주민등록번호"등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증명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계약조건 등

• 당첨자로 선정되었어도 계약 시 서류 검토에서 부적격(거주지, 신청 자격 미달 등)으로 판명이 된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공급신청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및 타인 명의로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철도 및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기간 이후 발생하는 잔여 세대는 임대사업자가 임의방식으로 공급함.
- 당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은 취소되고, 전대인 및 전차인 등 모두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환수 조치함을 유념하시기 바람.

7 기타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증보험 가입시]

- 당해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보증보험 가입대상임.
-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 100분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단, 사용검사 전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가 납부하되,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중 임차인의 부담분은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고 관리비에 포함하여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청구함.
-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보증금이 상승할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또한 변경된 금액으로 발급함.

■ 보증금의 회수와 임대보증금의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임대주택 매각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은 10년으로 임대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으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함.
-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할 수 있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허가)

■ 발코니 확장

• 본 임대주택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전 타입 및 세대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고 기본형 선택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여 공급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는 확인하며 계약자의 관리 및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한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학교배치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청(중부교육지원청 02-708-6584)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야 함.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02-708-6584) 학생 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방별 컴퓨터 추첨 때문에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배치 여건이 어려울 시 학군 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3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 일이 당초 입주예정일보다 지연 또는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없음.
• 입주 지정 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로부터 관리비, 연체료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보육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 및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8 유의사항(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 당첨, 입주, 관리 등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임차인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람.
• 2009.4.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음.
• 소유권 보존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대지지분은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 확정측량 진행하여 등기할 예정이며, 판매시설(별도분양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면적 증감의 경우에도 대지지분의 변동은 없음. 이에 대하여 동의하며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주택을 명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개조하거나 파손한 시설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복구 하여야 함.
• 퇴거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공제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과실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됨.

- 입주 시 잔금 등의 완납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부터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잔금 납부 및 입주 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보증금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추후 입주 지정 기간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자는 사용검사 후 입주 시 보존등기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입주 후 등기 관련 업무처리의 지연에 따라 전입신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만약 위 등기 업무처리 전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의 경우에는 입주자는 세대원 전출 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외부의 건물 신축, 단지 외 차량통행 및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단지 내 건축물의 배치 등으로 동별·층별·호수별로 일조권·조망권·생활권·환경권 등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설치로 소음 발생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전에 사업부지 및 견본주택 내방(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을 통해 필히 확인한 후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임대사업자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청약당첨자 및 계약고객만 방문 가능)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 및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 예정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코로나, 메르스 등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급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임대사업자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람.
- 서울시 및 그 외 지역의 타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견본주택 오픈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오픈 후 홈페이지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계약을 해야 함.

- 계약체결 이후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통지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는 책임지지 않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부담 및 납부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조망권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부(지붕 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집광판,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전대 금지(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임대사업자가 설치해주고 주택임대관리업자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 주체의 관리운영계획수립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입주 후 운영과 방법에 대해서 임차인은 이에 동의함.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 단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 냉·난방용 냉각탑,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저층부에 판매시설이 있으며,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옥상부에 설치하는 판매시설을 위한 실외기실(장비)로 인하여 저층 일부 세대는 미관/조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인지·수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허가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 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장, D/A, 조경패턴 등 외부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서울시 및 그 외 지역의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임대사업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함.
-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업무 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5개월, 하자 보수 업무는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최대 24개월) 동안 입주 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사용에 대한 일체 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 이전·축소 등을 요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자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입주 이후 임차인(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 저하 발생 시 임차인(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 및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는 동의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본 공사 시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임대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임대차계약시점에 따라 향후 임대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평형 및 평면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됨.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임대사업자 및 시공사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함.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 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임대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없는 것으로 함.
- 각종 광고, 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위탁자, 임대사업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관련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가 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임대주택이 포함된 당해 건축물의 시공회사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시공자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게 대리 이행을 요구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 신청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세대가 속한 위치,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북측(청계천로 및 청계천), 서측(3-1구역 해당 : 돈화문로 /

3-4,5구역 해당 : 3-1구역), 동측(3-1구역 해당 : 3-4, 5구역 / 3-4,5구역 해당 : 세운 청계상가)과 인접한 세대는 일조, 소음, 분진,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3-1구역 해당) 및 단지 가운데 남북을 연결하는(3-4,5구역 해당)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4시간 외부인이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로서 본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보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 등에 인접한 세대(지상 4층~지상 23층 세대)에서 야간 기준 소음을 초과 예측되어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음 저감 대책으로 차음성능이 우수한 창호 설치, 공동주택 주변 경적사용 금지, 지속적인 소음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단속카메라 설치, 중로 3-1호선 및 소로 1-2호선에 횡단보도, 감속표재판 등을 통한 30km/h 이하로 속도 저감 유도를 할 예정이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이 공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9 설계 고지사항

■ 공통사항

- 본 정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 시설의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카다로그, 단지모형 및 기타 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현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단지, 근린생활시설, 초등학교, 공공시설, 각종 기반시설의 이용 및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시설의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제기나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고,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구조 및 흙막이 설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사업시행인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내·외간 레벨 차에 의해 일부 세대의 전면/후면/측면의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석축, 자연경사처리 구간의 설치여부, 단지내외 연결 보도 및 계단,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연결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침해 및 선형이나 공법, 위치 등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창,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심의 등 인허가 결과, 구조 및 디자인 의도 등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와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펌프실, 주차장 등)은 획지별로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방식으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돌출 및 실사용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확장시의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의 단위세대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비구역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및 녹지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 내 도로 또는 공원 등이 아니므로 입주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동선,시설물, 경사도 및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종교시설, 보육시설 등은 현재 상황 또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공동주택 시공사의 공사범위가 아님)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구역외 도로설치는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계획보다 지연 설치될 수 있으며, 구역내 계획된 공원, 녹지, 도로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인허가 결과(실시계획(변경)인가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 현재 계획된 주변 공원과 녹지 계획 및 기타 기반시설 등은 향후 토지이용계획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채납 면적 변경 및 준공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고,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홈페이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임대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 내·외부

[공통사항]

- 공동주택은 총 2개동, 최고 27층 높이로 계획되어 있고, 지하주차장은 지하 7층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상 4층~27층(임대형 45C(3-4,5구역),49E(3-1구역)형은 지상 4층~27층까지 계획)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형생활주택은 지상 4층~27층(임대형 42B, 42C형은 지상4층~27층(3-4,5구역) 및 49E형은 지상 4~17층(3-1구역)까지 계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지하 8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별 구분없이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보행출입구는 단지 북측 및 동측에 위치해 있으며, 북측은 공동주택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출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고, 동측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로비는 보안장치에 의해 출입통제됩니다.)
- 차량진출입구는 단지 동측(3-1구역) 및 남서측(3-4,5구역)에 위치해 있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 2층에 비주거용 주차구획이 각 20대(3-1구역) 및 24대(3-4,5구역) 설치되어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비상차량동선 포함)과 보행자 출입구로 인한 인접세대의 사생활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 및 지층성상 변동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의 옹벽 및 사면에 인접한 동의 경우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시공시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높이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 및 사면, 자연석, 계단, 램프의 형태 및 종류, 노출범위,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배치관련 사항들은 (경미한)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며, 세운청계상가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더욱 침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 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공간,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상가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의 공원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도로 측에 면한 세대는 소음에 의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옹벽구조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시공구조상 보강시설물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세대별로 해당 시설물과의 거리는 차이가 있고 이용이 필요한 시설물의 사용에 불편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시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및 산책로 설치로 인해 공동주택 세대의 실내가 투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난간은 사용자 안전을 고려하고,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수직난간으로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보관소는 지하 2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소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배치 및 조경계획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세부 식재계획(위치, 규모, 수종 등) 및 조경선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의 녹지, 도로, 학교, 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조성시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지상1층에 반영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전파방해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휘트니스, 작은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의 세부 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용공간을 제공하고 시설물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분양구분(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홈페이지에 표시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 등의 이미지 자료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CG등의 이미지 자료는 천정고, 입면디자인, 벽체 위치 및 기둥설치 유무 등을 포함한 내부 구성 및 디자인은 인허가 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 개선 및 대관 인허가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센터, 경로당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부대시설의 위치는 인허가 및 법적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고 각 세대별 접근성 및 이용동선에 불편함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공동주택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출입구 인근에 조경식재공간, dry area, 자전거 보관소, 공동주택 출입구 등이 설치되어 근린생활시설 접근 및 이용에 동선 간섭과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위치에 따라 층고 및 천장고 등이 상이하며, 실시설계 및 시공시 구조보, 배관, 배선, 전등, 소방시설 등에 의해 유효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복도 일부에 가스관이 노출되어 설치되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 및 연료전기설비는 공동주택에 적용 되는 설비로 근린생활시설 전기에는 적용 되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 사항 - 단지 내 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 공동주택 및 근생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면적 증감, 주차대수 변경 및 위치이동 등을 포함)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별도 구획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과 동일한 차량진출입구를 이용하므로 단지내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는 주차장의 위치 및 형태 등에 따라 주차장 이용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2층까지 연결되는 차량진입로는 높이 2.7m이상, 통로폭 6.0m이상 확보하였으며, 주행 유효 높이는 통로구간 2.3m, 주차구간 2.1m로 택배차, 사다리차, 이사차량, 트럭 등의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 출입이 제한됩니다.(다만, 지하 2층 폐기물보관소 및 택배보관소 인근까지 통로구간의 유효높이는 2.7m까지 확보되어 있으나, 배관. 배선, 소방시설 설치에 따라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지하주차장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면적증감, 주차대수변경 및 위치이동 등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등의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위치한 공동주택 보관창고(설계도서상 기준 명칭)의 용도는 입주자용 창고이며, 면적이 협소해 개별 전용 또는 호실별 별도의 구획 및 시설물은 제공하지 아니하오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는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으로 이용하며,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 및 입점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 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건물의 주동부위]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승강기 인승, 속도, 탑승위치)등은 최종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의 내용에 준하며,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외벽마감은 지정페인트 및 세라믹타일이며, 저층 상가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시공될 예정으로, 재료의 종류, 색상 및 디자인 등은 실시설계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입면 위치별로 세라믹타일과 지정페인트 시공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일부세대는 휴게공간,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출입구 등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높이)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동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벽체에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 패널은 현장여건 또는 각종 인증 등에 따라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은 신설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입면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설치 유무, 규모 및 위치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및 야간 조명의 반사로 인해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지하 2층에 설치 예정인 무인택배시스템(세대수에 비해 설치개소가 적으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음)은 라인별로 이용거리에 차이가 있으니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에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의 형태, 재질, 색채 등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각 층에 제연실(제연휀룸)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 지붕 및 옥탑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 및 외부마감(입면 돌출여부)이 상이하며 이로 인해 시야 간섭, 창호간섭,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이동통신용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세대별 위치 및 조경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라인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속도 등은 관계법규가 정한 기준 및 심의조건 등에 맞추어 계획되었으며, 층수 및 사용세대수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의로 조정하지 않아 동별, 라인별로 사용인수 대비 대수 및 인승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평형이나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좌우대칭 및 세대현관 출입구 방향이 상이)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각종 공용시설(E/V,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시 각 동별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차이가 있어, 사용상의 여건(일부 동의 경우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에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창호의 크기 및 형태는 설계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1층 공동주택 주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근린생활시설 및 보행동선과 완벽히 구분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사생활권의 침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주동 옥상난간대 및 발코니 난간대의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동출입구 내부의 평면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기타층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의 평면 및 창호형태는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공동주택 지붕(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방배기용 덕트 및 정화조 덕트가 공동주택 공용PD공간을 활용할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공동주택 입주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전제로 고려한 설계입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발코니 입면 변화 및 창호 크기 및 위치 등의 차이로 서비스 면적과 채광 및 환기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바닥에 층간소음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세대분전반, 세대단자함(통신단자함)의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의 경우 세대 세대단지함(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설치 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의 내부 구성, 도어의 위치 및 개폐방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보일러실은 철판으로 각각 구획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임의로 철판 구획 및 점검구를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없으며 임의 제거 및 이동으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천장에 환기유니트 및 각종 설비, 소방배관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동일 평형 및 타입이라도 외벽마감, 색상, 마감재 돌출여부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조 및 조망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해당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업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된 시설물에 입주시 이를 임의 변경하여 발생한 하자에 보수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준공시 주택법 관련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변 일부 세대에 방음벽 설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루버창의 경우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환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높이는 설비배관 설치등으로 본공사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세대]-마감재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견본주택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나,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목문, PVC창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포함)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완충재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바랍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욕조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 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 석재, 바닥재, 가구류, 목창호류, 걸레받이, 벽지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발코니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홈페이지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주거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벽 장식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시 침실과 거실의 조망/채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창호,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 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마감, 디자인, 색상 등은 평형 및 평면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의 마감기준 및 품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및 공용부 마감공사, 저층부 특화공사 및 시설물공사, 조경공사 등 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대해 타사 마감사례와 비교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타일나누기는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아트월 길이 및 위치, 벽체 마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및 CG, 카달로그 등 안내문을 확인 바랍니다.

단위세대]-전기/설비

- 신발장 내부에 분전함, 통신 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가 되는 평면의 경우, 거실 또는 침실 커튼박스의 길이 및 깊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 도어카메라 설치로 인하여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홈페이지에 표시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배선기구 등의 전기 마감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은 현관 창고, 펜트리 또는 침실 내부에 일부 공간을 차지하여 설치예정이며, 위치는 홈페이지 내 표시 위치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 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현대오토에버와 제휴된 IoT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인 바닥열 급기장비가 대피실(공간) 상부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 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설비의 필터인 헤파필터는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 할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보일러는 세대별 전용 보일러실에 설치되며 보일러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 인입배관 및 가스계량기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보일러용 가스계량기는 발코니, 피난구역, 실외기실 또는 보일러실에 설치 될 예정이며 위치는 본 공사시 마감성을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호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씽크대 하부의 가구 디자인은 설비기기가 설치됨에 따라 견본주택 사양과 내부 폭 및 가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25A타입 제외)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화장실 천장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세대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악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홈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 점검구의 위치, 사양,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세대별,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세대 환기설비, 수전,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10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소화활동을 위한 법적 시설물로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대피공간(실)에는 법정 소방시설인 하향식 피난사다리가 설치되며(4층 세대 제외) 이로인해 내부 단차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하향식 피난사다리를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며, 피난사다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 방향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추후 이에 대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는 이해를 돕기위한 모델하우스 가시설물로 실시공시 설계도면 및 관계 법규에 의해 시공될 예정입니다.
- 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 및 보일러 연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옥상에는 설비 장비류(상가용 배기휀, 정화조 배기휀, 소방용휀,소방 펌프)가 설치될 예정이며, 기기 작동 시 인접한 실은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사업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건물 북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층 하부 피트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냉난방기기, 주방, 화장실 배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 등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등의 냉난방기기는 지열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며, 이에 따른 유지관리 및 사용 비용은 각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1구역 건물 남측에는 기계실등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휀룸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 돌출물,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및 D.A.(Dry Area) 위치, 크기, 개소, 형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정화조, 빗물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건물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겨울철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실외기실의 루버를 반드시 닫음을 유지해야 외기침입을 차단해야 하며, 미준수에 따른 배관 동파사고 발생등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정압기가 주차장 출입구 서측에 설치될 예정(3-4,5구역 해당)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발코니

- 발코니 외벽/측벽/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 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천정 또는 벽체의 돌출 및 실사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유무, 발코니 폭,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설치 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공시 난간 및 창호의 개소 및 위치, 난간의 높이, 난간 및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벽체에 결로방지단열재로 인한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하고 또한, 사업 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 됨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창호	적용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한 성능 2등급 이상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변압기, 전동기, 펌프 고효율기자재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거실,침실,주방/각 실 1개소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내 일괄소등장치 적용 - 60㎡미만 미적용/세대내 1개소
	고효율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 이상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 화장실 당 1개소 이상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각 실 1개소 적용
	절수설비	적용	세대내 설치 수전 절수형 설비 적용

■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므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분양가격 및 방법 등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여 시행함.

■ **본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중도금, 잔금의 각 납부일에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현장수납(직접납부) 등 기타 방법으로 임대보증금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납부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납부를 인정하지 않으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이니 유의하시기 바람.**

■ **관리형 토지신탁**

본 계약 목적물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함), 시행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이하 수탁자라 함) 및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임차인은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함.

1. 본 사업에서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은 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주체(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사업주체(임대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로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인지함.
2. 본 계약 목적물은「신탁법」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와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우리자산신탁(주)가 임대주택을 더센터시티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경우 중 빠른 시점에, 본 사업상 시행자 및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임차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임대차계약의 변경 등 별도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 됨.
3. 본 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더센터시티주식회사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주)에게 있음.
4. 임차인이 납부한 모든 임대차 관련 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와 이와 관련한 PF대출금 상환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5. 본 임대차계약상 내용 외 임차인과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6.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임대차 관련 대금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임대차 관련 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임대사업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 감리
회사명	㈜이가ACM건축사사무소	㈜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DA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DA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1,917,922,97원	439,555,844원	283,800,000원	78,716,36원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2.6M**

■ **임대사업자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임대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역삼동, 삼정빌딩) 13층	110111-2003236
시공회사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0111-2153015
시행위탁자	더센터시티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12층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110111-5598797

■ **입주자 모집공고 홈페이지 :** (http://세운블록임대주택.kr)

■ **분양 문의 :** ☎02-798-8910

※ 본 임차인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문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함.)